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도정책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정원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<정원 조정사항>

-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 - 일반직: 1,698명(+3명)
 - ▶ 4급 이상 (+1명), 5급 이하 (+2명)
 - 연구직: 197명(△2명)
 - ▶ 연구관 (△1명), 연구사 (△1명)
 - 지도직: 30명(△1명)
 - ▶ 지도사 (△1명)

5. 검토의견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정원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 이상 1명, 5급 이하 1명을 증원하고
 - 연구관, 연구사, 지도직을 각 1명씩 감원하는 것임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를 구분하여 4급 1명을 증원하였음.
 - 현재 17개 시도 중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가 단일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곳은 세종시와 충청북도 두 곳 뿐이라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업무와 장애인 복지업무를 분과하는 것은 필요함.
 - 다만, 분과에 따른 정원의 증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 방침에 따라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부족한 현실임.
 - 따라서 향후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, 업무확대 및 분과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에 우선적으로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음.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